

수 신 :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제 목 :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2023년 4월 14일

대표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윤권근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권기훈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김원규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김재용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김정옥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손한국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정일균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하병문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허시영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황순자	의원 (서명 또는 날인)

#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권근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23.04.14.

발의의원 : 윤권근, 권기훈,  
김원규, 김재용,  
김정옥, 손한국,  
정일균, 하병문,  
허시영, 황순자  
의원(10명)

## 1. 개정 이유

시민의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입주민들이 납부하는 관리비로 운영됨에 따라 재정의 운영과 단지의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 주민 참여가 매우 중요하며, 상위법인 「공동주택 관리법」에도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의사결정에 대하여 전자적인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음.

따라서 전자적 의사결정에 대한 비용 및 프로그램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감사단의 명칭과 각종 지원에 대한 평가단 운영방법을 정비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함.

## 2. 주요 내용

가.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및 자문을 위해 설치하는 감사단의 명칭을 「공동주택 관리 감사단」으로 명확히 하고, 감사단의 업무 중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비용 지원의 심의를 위한 평가단 설치 규정 등을 정비하여, 공동주택 단지의 각종 지원에 대한 심의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사전에 방지코자 함(안 제6조, 제8조, 제21조제2항, 제22조의2).

나. 전자적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및 시장이 보급하는 프로

그램의 무상 공급 등 관련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 단지 현장에서 전자적 방법의 전자투표 시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4항 신설).

### 3. 참고 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공동주택관리법).
- 나. 예산조치 : 관련부서 협의완료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감사단 설치)”를“(공동주택 관리 감사단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감사단”을 “공동주택 관리 감사단(이하 “감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감사단의 업무)”를“(감사단의 업무 및 평가단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에 대한 선정 심의

② 시장은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심의를 위하여 감사위원 중에서 10명 이내의 평가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단의 심의는 감사단의 심의로 본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모범관리단지 선정은 감사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의사결정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의 대상 및 기준, 절차,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전자적 의사결정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지원

2. 제3항에 따라 개발한 프로그램의 무료 보급 및 통합정보시스템의 무상 사용

제22조의2제1항 중 “지원의 결정은 제6조에 따른 감사단을 활용하여 10명 이내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심의한다”를 “지원은 감사단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

한다”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 <u>감사단 설치</u> ) 시장은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및 자문을 위해 감사단을 설치·운영한다.	제6조( <u>공동주택 관리 감사단 설치</u> ) ----- -- <u>공동주택 관리 감사단(이하 “감사단”이라 한다)</u> -----.
제8조( <u>감사단의 업무</u> ) 감사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6. <u>제22조제1항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선정 심의</u> 7. <u>제22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선정 심의</u> <u>&lt;신 설&gt;</u>	제8조( <u>감사단의 업무 및 평가단의 설치</u> ) ① -----. 1. ~ 5. (현행과 같음) 6. <u>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에 대한 선정 심의</u> <u>&lt;삭 제&gt;</u>  ② <u>시장은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심의를 위하여 감사위원 중에서 10명 이내의 평가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단의 심의는 감사단의 심의로 본다.</u>
제21조( <u>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u> ) ① (생략) ② <u>시장은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감사단을 활용하여 10명 이내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심의한다.</u> ③ ~ ⑤ (생략)	제21조( <u>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u> )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의 모범관리단지 선정은 감사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 <u>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공</u>	제22조( <u>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공</u>

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① ·

② (생략)

③ 시장은 컴퓨터, 모바일기기 등 유·무선 통신단말기기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전자적 의사결정 및 정보제공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시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1. ~ 7. (생략)

<신설>

제22조의2(지원의 결정 등) ①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지원의 결정은 제6조에 따른 감사단을 활용하여 10명 이내의 평

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통합  
정보시스템-----  
--.

1. ~ 7.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의사결정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의 대상 및 기준, 절차,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전자적 의사결정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지원

2. 제3항에 따라 개발한 프로그램의 무료 보급 및 통합정보시스템의 무상 사용

제22조의2(지원의 결정 등) ① ----- 지원은 감사단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가단을 구성하여 심의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 □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①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